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안년월일 : 1994. 12. 1.

발의자 : 이호혁 의원 외 11인

제안이유

- 교통수요 변화에 즉시 대처하는 버스노선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구 관내 일부노선의 연장 변경, 마을버스 관련 면허처리 등과 관련된 심의사항을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함.

주요골자

- 목적과 기능
- 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의 구성
- 회의록
- 위원회 임기
- 의견청취 및 조사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수당

관련근거

- 운일 33120-717 ('92. 4. 21)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 시달
-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 조례(안)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할지역내 버스노선의 조정과 마을버스관련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버스노선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개선 처리하고 버스노선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키기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사항
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및 변경사항
3.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4. 지하철 개통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사항
5.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노선조정인가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교통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초구 각국장 5인,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 및 심의안건에 관련된 등 출신 구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등장과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초구에 제출된 버스노선관련 민원사항 및 현안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안건으로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교통계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조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민원인, 안건관련 이해 당사자 및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서초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 (위원회의 교체)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구 방침에 의거 구성운영 되고 있는 서초구 시내버스노선 조정 협의회와 서초구 한정면허 처리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폐지한다.